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5
----------	-----

제출년월일 : 2019. 8.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에서 관련 조례 개정 건의, 교육장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사업을 일괄적으로 종합 검토함으로써 유사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경비 신청 시 관할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도록 개정(안 제4조)

나. 당연직 위원과 간사를 현 조직에 맞게 자구 수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붙임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9. 5. 13. ~ 2019. 6. 3.) 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2019. 5. 9. 기획감사실-5947)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19. 5. 9. 기획감사실-5947)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2019. 5. 8. 주민복지과-32745)
- 5)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2019. 6. 24. 기획감사실-7821)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군에서 수립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계획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매년 예산편성 이전까지 제출받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평생학습 담당”을 “교육경비업무 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군에서 수립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계획에 따른 신청서를 매년 예산편성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의 장은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해야 한다.</p> <p>② 교육장은 초·중학교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p> <p>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교육체육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p> <p>1. ~ 3. (생략)</p> <p>④ (생략)</p> <p>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생 학습담당이 된다.</p>	<p>제4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u>각급</u> 학교의 장은 군에서 수립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계획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매년 예산편성 이전까지 제출받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시설관리과장</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교육</u> <u>경비업무 담당</u>----- -----.</p>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보조의 신청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18. 12. 1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8. 12. 18.>

□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군에서 수립하는 보조금 보조계획에 따른 신청서를 매년 예산편성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의 장은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해야 한다.

② 교육장은 초·중학교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항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연락처	(033) 330 - 2020